



<노동시장개혁 이슈 리포트 ⑭>

## 파견근로 제한, 어떤 문제가 있나?

- 파견근로제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함. 파견근로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보면서, 임금 지급 등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근로 시간 등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봄.
- 현행법상 파견이 허용되는 업종은 컴퓨터, 회계, 세무, 노무, 금융, 특허, 기록보관 및 박물관 관리, 통역 및 번역, 창작 및 공연, 영화·연극 및 방송 등의 전문직업근과, 전기, 통신, 제도, 광학 및 전자장비 등 기술 분야, 그리고 사무지원, 수금 및 판매, 음식조리, 여행안내, 전화교환, 자동차 운전, 주차장 관리, 건물청소, 배달·운반 및 검침, 주유, 수위 및 경비 등을 포함해서 모두 32개 업종·197개 직종으로 제한되어 있음.

### 【파견근로자 현황】

- 1988년 2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제정한 이후 2014년 현재까지 허가 받은 파견업체 수는 789개에서 2,468개로, 파견근로자 사용업체는 4,302개에서 15,009개로, 파견근로자수는 41,545명에서 132,148명(전체 근로자의 0.5%, 전체 임금근로자의 0.7%에 해당)으로 3배가량 증가하였음. 파견업체 가운데 파견 실적이 있는 업체는 전체의 70% 내외이며 업체당 평균파견인원수는 매년 60~80명에 머물러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 ※ 위의 통계는 고용노동부 「근로자 파견사업현황」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통계와는 조사대상의 차이로 인해 파견근로자수에 차이가 있음).

### 【파견근로 제한의 문제점】

- 현행 파견법은 파견대상을 일정하게 제한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경험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총 32개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 가운데서도 안전보건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파견이 금지되어 있음.
- 또한 파견기간을 일정하게 제한하여 원칙적으로는 1년이나 파견사업주와 사용자사업주, 그리고 파견근로자가 합의할 경우 1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2년이 한계임. 단, 만55세 이상인 고령근로자는 2년을 초과해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음
- 현행 파견법은 이처럼 파견대상 업무나 파견기간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노동시장에서 파견근로의 활용도는 매우 낮은 편임. 그 대신 산업현장에서는 대상업무나 기간의 제한이 없는 용역 또는 도급 형태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용역이나 도급을 가장하여 파견근로자를 쓰는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이 문제가 되고 있음.

### 【파견근로 문제 해결방안】

-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는 동시에 기업의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시장을 보다 유연화 시킴으로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를 보다 확대하고 더 나아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의 제한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금지업종만을 규정한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 파견근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반영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다른 상용직 근로자와의 차별을 방지하고 동등한 권리가 부여될 수 있도록 차별금지제도는 강화해 나가고 있음. 실업률을 낮추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필요성과, 노동시장

에서의 수요 확대를 감안하여 파견업종의 허용 범위를 점차 넓혀가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임.

- 아울러 최장 2년으로 되어 있는 파견 기간도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그리고 파견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거나 최초 기간제한 규정을 현행보다 대폭 늘리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함. 특히 55세 이상에 대해서는 파견규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면 어느 정도 고령자 취업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음.

####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2014년 하반기 근로자 파견사업 현황 2015.04

이승길, 파견법제의 개혁 2015.10

김승택 외, 파견허용업무의 합리적 조정 및 기대효과에 관한 연구 2014.11